

## 발 간 사

언론보도로 인한 법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2001년 한해 동안 처리했던 중재신청사건이 총 659건으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고, 법원에 제기되는 언론소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다수 수용자들에게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종사하는 언론인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위축감으로 인해 언론이 갖는 사회의 비판, 감시라는 공적 임무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도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용자 입장에서라도 보도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최종해결수단인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간 교섭이나 언론중재절차 등을 통한 화해를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언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 제9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종 심급 판결을 기준으로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반론보도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각종 언론관계 판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법적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서 수용자, 언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2002년 6 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 차 례

##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피신청인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로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가지 방송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들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외 17인 대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414) ..... 13
2. 정부의 언론장악의도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청구는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  
**국정홍보처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0823) ..... 30
3.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보도내용만으로는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학교법인 청강학원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카합518) ..... 36
4. '우리나라 의사들' 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 한국방송공사**

|                                                                                                                                                                                          |    |
|------------------------------------------------------------------------------------------------------------------------------------------------------------------------------------------|----|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합1884) .....                                                                                                                                                           | 42 |
| 5. 해당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br>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br>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br>언론개혁시민연대 외 3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br>(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2496) ..... | 47 |
| 6.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br>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br>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여     대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7인<br>(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6806) .....                              | 56 |

## II. 손해배상청구사례

|                                                                                                                                                                                |     |
|--------------------------------------------------------------------------------------------------------------------------------------------------------------------------------|-----|
| 1.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br>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br>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br>이     외 11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정<br>(서울고등법원 2000나9859) ..... | 96  |
| 2.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혐의사실을 두고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br>단정정보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br>조     대 주식회사 대한매일신보사 외 5인<br>(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4132) .....                                                | 107 |

3. 사디즘적 병리현상이라는 표현은 특정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이 대 주식회사 월간 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4917, 서울고등법원 2000나18822) ..... 118
  
4. 원고가 개설한 무료혈액센터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04) ..... 143
  
5. 개인의 진술을 수많은 독자에게 확대 배포하는 전파자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와는 별도의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백 대 최 (서울고등법원 2000나11081)** ..... 154
  
6.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다  
**김 외 20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5683) ..... 167
  
7.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보도와 더불어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엄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1563) ..... 189

8. 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자와 언론사는 필요한 취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조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9가합2207, 서울고등법원 2000나25745) ..... 200

9. 언론기관의 보도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비방 내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임 대 주식회사 서울방송 외 2인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7982)** ..... 222

10.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교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1180) ..... 234

11.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극단적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경실련 통일협회, 이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5인**

(서울지방법원 97가합68721) ..... 248

12. 이 사건 보도가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조 외 3인 대 한국방송공사,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961) ..... 264

13. 추가등락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최 , 유 대 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1나8495) ..... 278

14. 언론사들이 검사의 공식발표에 기하여 피의사실을 보도한 이상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 외 2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8인**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8769) ..... 284

15. 변호사인 원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신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9514, 서울고등법원 2001나11989) ..... 301

16.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 , 윤 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십일**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8399) ..... 321

17. 피고 언론사들이 공개한 원고의 편지 및 사진들은 원고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로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박○○ 대 주식회사 학원사 외 2인(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5387) ..... 331
18.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8인 대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2인  
〔서울고등법원 99나3282,3299(병합), 대법원 2000다37524, 2000다37531(병합)] ..... 350

### Ⅲ.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1.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문화방송(헌법재판소 2000헌바36) ..... 378

### Ⅳ. 기 타 사 례

1.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자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43456) ..... 387

2. 방송사 사정으로 통상의 방영시간과 달리 반론보도문이 방송되었더라도  
판결이 정한 방송순서에 따라 방송하였다면 이는 판결주문의  
적법한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이.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법원 2001다81450) ..... 392